

직제규정

- | | |
|--|--|
| <input type="checkbox"/> 제정 : 1999. 10. 1. | <input type="checkbox"/> 개정 : 2018. 3. 1. |
| <input type="checkbox"/> 개정 : 2000. 3. 1. | <input type="checkbox"/> 개정 : 2019. 6. 18. |
| <input type="checkbox"/> 개정 : 2011. 6. 30. | <input type="checkbox"/> 개정 : 2020. 3. 13. |
| <input type="checkbox"/> 개정 : 2012. 6. 29. | <input type="checkbox"/> 개정 : 2020. 7. 1. |
| <input type="checkbox"/> 개정 : 2013. 5. 15. | <input type="checkbox"/> 개정 : 2021. 2. 26. |
| <input type="checkbox"/> 개정 : 2014. 6. 25. | <input type="checkbox"/> 개정 : 2021. 7. 30. |
| <input type="checkbox"/> 개정 : 2016. 3. 9. | <input type="checkbox"/> 개정 : 2021. 9. 1. |
| <input type="checkbox"/> 개정 : 2017. 8. 31. | <input type="checkbox"/> 개정 : 2021. 12. 1.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원과학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조직의 대강(大綱)을 정하여 체계 있는 교무(校務)의 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분장) 이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각 부서의 사무분장은 따로 정한다.

제 2 장 편 제

제3조(기구) ① 본교는 경영관리실, 산학협력처, 교학처, 학생지원처, 총무처, 기획처, 산학협력단, 부속기관 및 각 부(과)로 구성한다. <개정 : 2020.3.13.>

② 경영관리실에 경영관리과를 두고, 산학협력처에 산학협력과, 취·창업지원과, 창업교육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두며, 교학처에 교무과, 학적과, 2부교학과, 성인학습자지원센터를 두고, 학생지원처에 학생복지과, 진로·심리상담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인권센터를 두며, 총무처에 총무과, 경리과, 업무과, 관리과, 보건소를 두고 기획처에 기획과, 평가과를 둔다. <개정 : 2020.3.13.>

③ 산학협력단의 조직은 별도로 정하도록 한다. <신규 : 2020.3.13.>

제4조(부속기관) 이 대학에 다음의 부속기관을 둔다. <개정 : 2020.3.13.>

1. 입학관리본부
2. 교육혁신원
 - 가. 역량교육센터
 - 나. 직업기초·교양교육센터
 - 다. 교수학습센터
 - 라. 원격교육지원센터

4-1-1 직제규정

3. 미디어센터
4. 국제협력센터
5. 도서관
6. <삭제 : 2021.7.30.>
7. 정보전산원
8. 4차산업기술교육원 <신규 : 2020.7.1.>
 - 가. 스마트팩토리기술인력센터
 - 나. 인공지능기술인력센터
 - 다. 클라우드교육센터

제5조(부설 연구소) 이 본교에 다음의 부설 연구소를 둔다. <개정 : 2020.3.13.>

1. 산업기술연구소
2. 건설환경연구소

제6조(부설 교육기관) 이 본교에 다음의 부설 교육기관을 둔다.

1. 평생교육원
2. <삭제 : 2020.3.13.>

제7조(위원회) 본교의 각종 중요사항을 심의·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 3 장 직위·직무·직급

제8조(직위) ① 각 실(처)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보하고 필요시에는 각 실(처)에 부처장 및 차장을 둘 수 있다. 총무처장은 일반직원으로 보한다.

② 과(팀)의 장은 일반직원으로 보한다.

③ 부속기관 및 부설교육기관의 장은 조교수 이상 교원 또는 일반직원으로 보한다.

④ 센터의 장은 조교수 이상 교원 또는 일반직원으로 보하며, 필요시에는 부센터장을 둘 수 있다.

제9조(직무) 각 부서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담당 업무를 총괄 관장하며,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0조(직급) 교원 및 일반직원의 직급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의 보직자는 이 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1년 6월 30일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의 보직자는 이 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1-1 직제규정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